예 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7,656,392	14,329,692
일반회계	454,627,015	13,638,810
특별회계	23,029,377	690,881
기타특별회계	23,029,377	690,881
상수도특별회계	10,445,831	313,375
자활기금특별회계	29,201	87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2,305	18,369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309,155	129,275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150,285	4,509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7,474,600	224,238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000	2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333,05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8억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